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1 - 2호

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제8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 공고

사회보장급여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,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기(’21.12.1.~’23.11.30.)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을 모집합니다.

2021년 10월 18일

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

1. 운영 근거, 임기 및 역할

가. 근거
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
-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2조 제3항

나. 위원임기: 2년(2021. 12. 1. ~ 2023. 11. 30)

-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임기는 동일 함
- 위촉 위원(민간위원): 위원 활동 중 사직, 인사이동, 업무변경 등 직무 변경이 생길 경우 위원 또는 추천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협의체로 통보해야 하며 기관에서는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

으로 함(단, 후임자는 팀장급 또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여야 함)

- 임명 위원(시 소속 공무원): 위원 활동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자동 임명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함

다. 주요역할
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구성 부문 및 자격

가. 실무협의체

- 위촉 위원(민간부문 및 기타 연계 영역, 공공기관, 실무분과장)
  -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
  - 사회보장분야 이용·생활(거주)시설이나 사회복지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관련 법인·시설·단체의 기관장(종사자)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
  -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관련 원활한 연계·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자 위촉
  -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·단체·비영리민간단체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위촉
  - 7기 활동 위원의 경우 7기 출석률 50% 이상
  -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구성

• 임명 위원(시 소속 공무원)
  -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: 사회복지,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보장(고용, 주거, 문화, 교육, 환경 등) 분야의 담당 부서장 또는 해당 분야 팀장

나. 실무분과
• 위촉 위원(민간부문 및 기타 연계 영역, 공공기관)
  - 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,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시설·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(팀장급 또는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)로 구성
  -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·단체·비영리민간단체의 실무자(중간관리자) 위촉
  - 7기 활동 위원의 경우 7기 출석률 50% 이상
  -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침『양성평등기본법』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• 임명 위원(시 소속 공무원)
  - 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,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
  - 사회보장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관련분야 실무분과 위원 역할 수행

3. 실무분과의 구성

가. 대상별 분과
• 지역의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,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무분과
•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(다문화가족분과, 여성가족분과, 등)

∴ 8기 대상별 분과(5개): 가족, 노인, 아동보육, 장애인, 청소년

나. 기능별 분과

-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(소득보장, 보건의료, 고용·주거, 문화·체육, 환경)
- 지역복지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, 지역사회통합돌봄, 통합사례관리, 자원동원·배분, 자살예방, 사회적 경제, 마을 분과, 읍면동 협의체(지원·네트워크강화), 지역복지사업 분과 등
- 지역의 특정 문제해결이나 전문서비스 제공, 자원 개발을 위해 분과 구성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서민금융진흥원, 가족센터, 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지원센터의 참여 확대

∴ 8기 기능별 분과(4개): 교육문화, 시민건강, 자활고용주거, 지역사회

4. 위원의 구성(인원) 및 협력체계(참여기관)

가. 실무협의체

※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(임명)

- 위촉 위원(민간부문 및 기타 연계 영역, 공공기관, 실무분과장)
  - 전체 실무협의체 위원 인원의 2/3 이내 구성
  - 『양성평등기본법』 제21조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함
- 임명 위원(시 소속 공무원)
  - 전체 실무협의체 위원 인원의 1/3 이내 구성

나. 실무분과

- 분과 별 역할 및 협력체계(참여기관)(안)

분과	역할	협력체계(참여기관)	
		민(위촉 위원)	관(임명 위원)
가족	-가족, 여성 정책 검토 및 제안 -가족, 여성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가족, 여성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가족, 여성 시설·기관·단체 -공공기관(경찰서, 등) -양성평등 관련 기관 -가족센터, 가정위탁지원센터, 이주민센터, 하나센터 -관련 연구기관 등	-가족지원(정책) 담당자 -여성지원(정책) 담당자 -양성평등 정책 담당자

분과	역할	협력체계(참여기관)	
		민(위촉 위원)	관(임명 위원)
교육 문화	-평생 교육 정책 검토 및 제안 -문화예술, 여가, 체육, 관광 정책 검토 및 제안 -교육, 문화예술 등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교육, 문화예술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교육 관련 사업 추진 시설·기관·단체 -교육기관(교육청, 학교) -평생학습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-사회복지사협회(복지이음마루), 사회복지협의회, 자원봉사센터 -작은도서관협회 -복지관(종합, 노인, 장애인) -문화재단, 문화예술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-체육관련, 여가문화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-제주참여환경연대, 제주환경교육센터 -관련 연구기관 등	-문화예술정책 담당자 -평생학습 담당자 -인문학 담당자 -관광정책 담당자 -체육행정 담당자
노인	-노인 정책 검토 및 제안 -노인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노인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노인 시설·기관·단체 -복지관(종합, 노인) -대한노인회, 경로당광역지원센터,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-노인 일자리 담당 기관 -장기요양기관 -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공단 -노인보호전문기관, 치매센터 -관련 연구기관 등	-노인정책 담당자 -경로복지 담당자 -노인요양 담당자
시민 건강	-시민의 신체·정신 건강, 환경, 먹거리 보장 등 건강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-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및 서비스 연계 -보건의료 및 건강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보건의료 시설·기관·단체·협회 -정신건강 기관 -국민건강보험공단 -건강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-치매센터, 암센터 -수어통역지원센터 -환경운동단체 -복지관(종합, 노인, 장애인) -관련 연구기관 등	-방문건강관리 담당자 -의료보장 담당자

분과	역할	협력체계(참여기관)	
		민(위촉 위원)	관(임명 위원)
아동 보육	-아동 정책 검토 및 제안 -보육(돌봄) 정책 검토 및 제안 -아동, 보육(돌봄)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아동, 보육(돌봄)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아동 시설·기관·단체 -아동보호전문기관 -어린이재단, 가정위탁지원센터, 가족센터 -복지관(종합, 장애인) -지역아동센터·어린이집(연합회) -육아종합지원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인구보건협회 -관련 연구기관 등	-아동복지(정책) 담당자 -아동보호 담당자 -아동친화 담당자 -보육지원(정책) 담당자 -지역아동센터 담당자 -아동복지시설 담당자
자활 고용 주거	-자활 정책 검토 및 제안 -고용(일자리) 정책 검토 및 제안 -주거복지 정책 검토 및 제안 -자활, 고용, 주거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자활, 고용, 주거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노인, 중장년, 청년 일자리 담당 시설·기관·단체 (시니어클럽, 더 큰 내일센터 등) -장애인, 여성 일자리 시설·기관·단체 (직업재활시설, 여성자활, 인력개발센터 등) -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(자활 등) 시설·기관·단체 -사회적경제지원센터 -주거복지센터, JDC, LH -고용복지플러스센터 -복지관(종합, 노인, 장애인) -관련 연구기관 등	-일자리지원(정책) 담당자 -자활업무 담당자 -주거복지업무 담당자
장애인	-장애인 정책 검토 및 제안 -장애인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장애인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장애인 시설·기관·단체 -복지관(종합, 장애인) -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,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-국민건강보험공단 -수어통역지원센터 -관련 연구기관 등	-장애인지원(정책) 담당자 -통합돌봄지원 담당자 -장애인업무 담당자

분과	역할	협력체계(참여기관)	
		민(위촉 위원)	관(임명 위원)
지역사회	-지역사회 정책 검토 및 제안 -인적·물적 자원 파악 및 서비스 연계 -지역사회 문제 해결 정책 제안 -보호, 안전 정책 검토 및 제안 -환경 정책 검토 및 제안 -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복지관(종합, 노인, 장애인) -자원봉사센터 -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사회복지협의회, 사회복지사협회 -보호, 안전, 환경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-범률홈닥터, 경찰서, 소방서 -소통협력센터 -신용회복위원회 -관련 연구기관 등	-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-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-긴급복지지원 담당자
청소년	-청소년 정책 검토 및 제안 -교육 정책 검토 및 제안 -청소년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-청소년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-사례회의 가능	-청소년 시설·기관·단체 -교육기관(교육청, 학교) -정신건강 및 상담 기관 -가정위탁지원센터, 가족센터 -복지관(종합, 장애인) -관련 연구기관 등	-청소년지원(정책) 담당자 -교육지원(정책) 담당자 -청소년 수련관 업무 담당자

5. 모집 부문

가. 실무협의체

- 사회복지 및 연계 분야 전문가: 10명 내외

나. 실무분과

- 대상자별 5개 분과: 가족, 노인, 아동보육, 장애인, 청소년
- 기능별 4개 분과: 교육문화, 시민건강, 자활고용주거, 지역사회

6. 공고 개요

가. 구성절차

- 기　　간: 2021. 10. 18.(월) 14:00 ~ 11. 1.(월) 18:00

※ 모집 기간 외 위원 추가 신청 요청 시 선정은 분과에서 진행함

- 제출서류

- 실무협의체: 위원 신청 공문, 지원서

- 실무분과: 위원 신청 공문 및 기관장 추천서

- 접수방법: 제주시협의체 홈페이지(www.jejuswc.kr) 위원 신청
- 접 수 처: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(728-2475~7)
- 선정방법: 선정 T/F 심사
- 결과발표: 2021. 11. 12.(금)
- 결과통지: 개별 통지 및 협의체 홈페이지(www.jejuswc.kr) 공고 게시
- 사전교육 및 위촉식: 11월 전체 위촉식 또는 분과별 임시 교육(회의) 진행

나. 모집 인원 초과 시 선발 방법

- 관련분야 실무 경력 순
- 직능별 중복 기관을 제한 할 수 있음

붙임　1. 8기 실무협의체 위원 지원서(서식) 1부
　　2. 8기 실무분과 위원 추천서(서식) 1부
　　3.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위원 신청 방법 1부